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6] <개정 1996.6.20>

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(제55조관련)

구 분	저장또는사용합계량	관 리 보 안 책 임 자 의 자 격
화약류저장소(꽃불류저장소·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및 도화선 저장소를 제외)의 설치자	연중 40톤 이상 의 폭약	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	연중 40톤 미만 의 폭약	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꽃불류저장소·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또는 도화선 저장소의 설치자		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사 용 자	월중 2톤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	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	월중 50킬로그램 이상 2톤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	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	월중 50킬로그램 미만이나 6월이상 장기 사용시	3급·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비고 : 사용자는 화약류사용장소마다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약류사용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있어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상호간의 거리 및 화약류의 사용량으로 보아 1인으로 가능하거나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수보다 적은 수의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, 밤낮을 계속하여 작업하는 사용장소에는 2인이상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		